

2023년 1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귀하

참조.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이노공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신원식 국방부장관

내용: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2024년 4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 초안 작성국이 되고 결의안에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및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송환 문제, 다른 인권 증진 및 책임규명 관련 표현을 강화할 한국의 책임

윤석열 대통령께

우리는 한국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2024년 4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 초안 작성국이 되고 결의안에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및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송환 문제, 다른 인권 증진 및 책임규명 관련 표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Annex: List of proposed changes to the 2023 HRC DPRK resolution 참조).

1.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 초안 작성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이 단독으로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인권위원회(2005년)/이사회(2008년 이후) 및 유엔 총회에서는 EU와 일본이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 초안 작성자가 되어 전자는 일본, 후자는 EU가 작성을 주도하였으며, 2019년 이후로는 EU가 다시 단독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작성을 맡아왔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은 단 한 번도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의 초안 작성국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이 되기조차 거부하는 등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2014년 12월 22일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의 2013년-2014년 비상임이사국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당시 오준 유엔 대사는 “남한 사람에게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한국이 2024년-2025년 다시 유엔 안보리에 복귀하는 시점에 한국은 이들 말을 실천하기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 초안 작성국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니지만 이는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초안 작성국이 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초안 작성이 결의안을 “정치화”시키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반대를 초래할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북한의 진행 중인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인권침해의 증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도 한국의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초안 작성 때문에 표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초안 작성을 중단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논리대로라면 차기 정부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이 되기를 거부할 지도 모르므로 현 정부에서도 계속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이 되지 않은 것이 “일관적”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정부에서 2027년 봄까지 앞으로 4

번의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서 공동 초안 작성을 확립된 실행으로 만든다면 그 어느 정부도 이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정전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약 5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않은 지 70년, 북한에 억류 중인 최소 6명의 한국 시민 중 첫번째 사람이 억류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유럽연합(EU)이 제안하고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국군포로 및 한국인 억류자 관련 표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2022년 11월 13일 프놈펜 성명에서 귀하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또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에 주목합니다.¹

뒤이어 2022년 12월 9일 유엔에서는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시민, 일본 및 대한민국 시민의 납치와 강제실종, 북한에 자의에 반하여 붙잡혀 있는 다른 국적자들, 미송환 전쟁포로의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억류자, 피랍자, 실종자에 관한 모든 미해결 사안을 해결하고 이들을 즉각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31개국의 공동 성명이 있었습니다.²

2023년 4월 26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³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공동 성명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지도자들은 공동으로 “북한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하였습니다.⁴

하지만 이들 문제에 관해서는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상황에 관한 아리아 포물러 회의(Arria-formula meeting)에서 한국은 이들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 5월 17일 캐나다 트뤼도 총리와의 공동성명에서도 양국이 “북한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 주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다짐하였에도 이들 문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⁵

2023년 11월 22일 영국 수낙 총리와의 공동성명⁶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약속, 2023년 12월 13일 네덜란드 루터 총리와의

¹ [전문]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2022.11.1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8211>

² Joint Statement Delivered by Ambassador Linda Thomas-Greenfield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cember 9, 2022), <https://usun.usmission.gov/joint-statement-delivered-by-ambassador-linda-thomas-greenfield-on-the-human-rights-situation-in-the-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

³ [전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2023.04.2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326>

⁴ 캠프 데이비드 정신 (2023. 8. 19), <https://kr.usembassy.gov/ko/081923-the-spirit-of-camp-david-joint-statement-of-japan-the-republic-of-korea-and-the-united-states-ko>

⁵ [전문] 대한민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공동성명 (2023.05.1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5280>

⁶ 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서명…‘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2023.11.2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971>

공동성명⁷은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합의를 포함하였으나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에 관해서는 역시 침묵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2021년 3월 23일 결의 46/17호, 2022년 4월 1일 결의 49/22호, 2023년 4월 4일 결의 52/28호 前文 문단 20의 국군포로에 관한 표현(“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의 계속되는 인권침해 의혹에 우려를 표하며”)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속되는”을 “계속되는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의 계속되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하의 송환권 거부 및”으로 하고, “의혹에”를 “의혹, 특히 강제노동, 노예화, 고문, 구금, 강제실종, 처형, 성분 제도에 따른 차별 및 가족의 강제 분리”로 할 것을 호소합니다.

한국인 억류자 6인(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김원호, 고현철 및 신원미상 1인) 관련해서는 우리는 현재 알려진 북한내 외국인 구금자는 한국 출신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2023년 4월 4일 결의 52/28호 본문 문단 2(1)(“북한에 구금된 타국민에게 보호를 제공”)의 “타국민” 및 前文 문단 20(“북한에 건강이나 구금 조건에 관한 정보 없이 구금된 타 회원국 국민 문제에 … 우려를 표하며”)의 “타 회원국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타국/타 회원국,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체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또한 귀 정부가 결의에 알려진 한국인 억류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방법을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 유엔 인권이사회의 미얀마 결의, 즉 2017년 3월 24일 결의 34/22호(“2017년 1월 헌법 전문가이자 민주주의민족동맹 고위 고문인 코 니, 2016년 11월 토지 및 환경 활동가 노 치 판 다잉, 2016년 12월 언론인 소에 모에 툰 살해”), 2018년 3월 23일 결의 37/32호(“2017년 1월 헌법 전문가이자 민주주의민족동맹 고위 고문인 코 니, 2016년 11월 토지 및 환경 활동가 노 치 판 다잉, 2016년 12월 언론인 소에 모에 툰 살해, 2015년 1월 카친족 교사 마란 루라 및 탕바우 흐란 난 칭 강간 살해” “언론인 와 론 및 초 소에우가 구속되고, 기소되고, 형이 선고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들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호소”), 2019년 3월 22일 결의 40/29호(언론인 와 론 및 초 소에우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 호소를 반복”), 2020년 6월 22일 결의 43/26호(“언론인 와 론 및 초 소에우의 석방을 환영”), 2021년 3월 24일 결의 46/21호, 2022년 4월 1일 결의 49/23호 및 2023년 4월 4일 결의 52/31호(“윈 민트 대통령,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2021년 2월 1일 도중, 그리고 그 이후에 허울 좋은 이유로 자의적으로 구금되거나 체포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호소”)를 참조 바랍니다.

2022년 4월 1일 결의 49/22호 및 2023년 4월 4일 결의 52/28호 前文 문단 19은 납북자와 관련하여 “강제·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이 전달한 수많은 서한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일하고 실질적 내용이 없는 답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서한들에 대해서도 특히 “통영의 딸” 신숙자, 오혜원, 오규원 사건(의견 4/2012)⁸ 및 1969년 대한항공 YS-11기 납북자 황원 사건(의견 69/2019)⁹에서 “동일하고 실질적 내용이 없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前文 문단 19에 “강제·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을 “강제·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및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으로 대체하여 WGAD에 관한 언급을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3.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송환 정책 및 실행

⁷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명문화…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체화 (2023.12.1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766>

⁸ Opinion No. 4/2012 concerning Shin Sook Ja, Oh Hae Won and Oh Kyu W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WGAD/2012/4 [Adopted on 2 May 2012], paras. 15-16, <https://undocs.org/A/HRC/WGAD/2012/4>

⁹ Opinion No. 69/2019 concerning Hwang W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WGAD/2019/69 [Adopted on 20 November 2019], paras. 35-37, <https://undocs.org/A/HRC/WGAD/2019/69>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DPRK COI)는 “[북한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들(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의 심각성, 규모, 성질(gravity, scale and nature)은 당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를 드러냅니다”라 판단하였습니다.¹⁰ DPRK COI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북한 사람들은 송환되면 고문, 성적 및 젠더 기반 폭력(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자의적 구금, 강제실종, 심지어 처형, 강제낙태, 영아살해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¹¹ 그러나 중국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규정한 유엔 난민 협약 및 의정서와 고문방지협약, 그리고 인신매매에 관한 팔레르모 의정서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을 계속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강제로 송환하고 있습니다.¹² DPRK COI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존중”하고 “국제 인권 감시자들이 확인한 바대로 대우가 뚜렷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어느 누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제 송환을 삼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¹³ 북한에서 그 같은 뚜렷한 개선은 여전히 없습니다.

DPRK COI에 따르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북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자행되어 왔으며,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¹⁴ 2013년 12월 16일 DPRK COI는 중국 정부 앞으로 “중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에 대한 강제송환 정책과 실행, 특히 중국 관리들이 이들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리들에게 제공하는 것 [포함]에 관한 우려를 요약”하고, 중국 정부가 “해당 관리들에게 송환 및 정보교환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자행을 구체적으로 겨냥하거나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 그 같은 행위가 반인도범죄의 방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¹⁵

1999년 5월 북중 국경 지대로 파견된 UNHCR(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조사단이 중국내 미등록 북한 사람들 중 북한 난민 일부의 존재를 드러내자 중국 정부는 조사단의 결과에 대해 UNHCR을 질책하고 중국내 미등록 북한 사람들에 대한 UNHCR의 공식 관여를 불허하였습니다.¹⁶ UNHCR은 정치적으로 차별적인 북한내 식량 배급 체계를 근거로 이들 탈북민을 난민으로 분류하였습니다.¹⁷

2006년 3월 중국 방문 중 안토니오 구테흐스 당시 유엔 난민최고대표는 일부는 “1951년 난민 협약상 해당되는 박해 위험과 연계된 출신국으로의 추방 위험” 때문에 현장 난민(refugees sur-place)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중국내 북한 사람들에 대해 중국 관리들과 “매우 격렬하고 솔직하며 의미 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스스로 말하였습니다.¹⁸ 2013년 5월

¹⁰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7 February 2014), A/HRC/25/CRP.1, para. 1211, <https://undocs.org/A/HRC/25/CRP.1>

¹¹ Id., paras. 380-434.

¹² Id., paras. 435-477.

¹³ Id., para. 1221 (a).

¹⁴ Id., paras. 1098-1114.

¹⁵ Id., para. 1197.

¹⁶ U.S. Committee for Refugees World Refugee Survey 2000 – China (1 June 2000),

<https://www.refworld.org/docid/3ae6a8cc4.html> ; 고승일, “UNHCR, 탈북자 일부 난민 인정”, 연합뉴스 1999. 10. 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479815?sid=100> ; Korea Herald “Seoul reacts cautiously to U.N. move on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1999.10.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4/0000012041?sid=104>

¹⁷ Roberta Cohen, “Can the UN Secretary-General Help the 2,000 North Koreans Detained in China? With every reason to believe North Koreans would face persecution and torture back home, the U.N. must take a stronger stance on China’s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July 5, 2023), <https://thediplomat.com/2023/07/can-the-un-secretary-general-help-the-2000-north-koreans-detained-in-china> (“Indeed, Guterres would do well to reveal that UNHCR staff, when allowed access to the China-North Korea border in the mid 1990s, classified starving North Koreans as refugees, because they were subject to North Korea’s politically discriminatory food distribution policies.

¹⁸ António Guterres, “Statement to media by Mr. António Guterres,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on the conclusion of his Mission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ijing, 23 March 2006” (23 March 2006), <https://www.unhcr.org/publications/statement-media-mr-antonio-guterres-united-nations-high-commissioner-refugees>

구테흐스 당시 유엔 난민최고대표는 라오스로부터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사람 9명의 안전함과 안전보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¹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을 포함한 유엔 특별절차, 특히 고문방지위원회(CAT)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등 조약기구는 중국이 탈북민에 대하여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반복하여 요청해왔습니다. 중국의 보편적 인권정례검토 (UPR)에서도 다양한 나라들이 유사한 권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송환 정책 및 실행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COVID-19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2021년 8월 23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 앞으로 “2020년 1월 COVID-19 우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국간 국경이 봉쇄된 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체포, 구금된 중국내 최소 1,170명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람들의 체포, 구금 및 송환 위협”에 관한 정보에 관심을 끌기 위한 서한을 보냈습니다.²⁰ 서한은 “2001년 4월 14일 [중국 정부가] 셴양에서 1년 넘게 구금되었던 50명이 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람들을 송환시켰다는” 정보도 언급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8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약 70%가 여성인 최소 2,000명으로 추정되는 탈북민의 자의적 구금과 이들을 자의적 구금, 고문, 강제실종, 초법적 살인 등 중대한 인권침해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있는 북한 강제송환 위험에 관한 또다른 서한을 중국 앞으로 보냈습니다.²¹

2023년 9월 21일 북한이 국경 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보이자 제 19차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2023년 9월 23일부터 10월 8일)을 전후하여 널리 예견된 탈북민 구금자의 강제송환 재개를 우려한 인권 NGO 들은 중국 시진핑 주석 앞으로 탈북민의 법적 지위와 이들의 북한 추방 중단을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²²

그러나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하루 후인 2023년 10월 9일 밤 중국은 최소 500명의 북한 구금자를 송환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²³ 유엔 인권 전문가들도 보도된 송환에 우려를 표하고 중국이 “국제법상 보장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²⁴ 이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구금 중이며 같은 운명에 직면해있다”고 덧붙였다.

¹⁹ UNHCR, “UNHCR chief calls on states to respect non-refoulement after North Koreans deported from Laos” (30 May 2013), <https://www.unhcr.org/news/news-releases/unhcr-chief-calls-states-respect-non-refoulement-after-north-koreans-deported>

²⁰ Joint allegation letter to China by Tomás Ojea Quintana,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iriam Estrada-Castillo, Vice-Chair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and Nils Melzer,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JAL CHN 8/2021, August 23, 2021,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nFile?gId=26571> (accessed September 5, 2023).

²¹ Joint allegation letter to China by Matthew Gillett, Vice-Chair on Communications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Elizabeth Salmo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ua Baldé, Chair-Rapporteur of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Felipe González Morales,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Reem Alsalem,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ts causes and consequences; Dorothy Estrada-Tanck, Chair-Rapporteur of the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JAL CHN 9/2023, 18 July 2023,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nFile?gId=28210> (accessed September 5, 2023).

²² Open Joint Letter to President Xi Jinping re: China’s Forcibl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September 21, 2023), <https://www.hrw.org/news/2023/09/21/letter-human-rights-watch-president-xi-jinping> (accessed November 7, 2023).

²³ Human Rights Watch (HRW), “China Forcibly Returns More than 500 to North Korea: Returnees, Mostly Women, Face Torture, Sexual Abuse, Forced Labor” (October 12, 2023), <https://www.hrw.org/news/2023/10/12/china-forcibly-returns-more-500-north-korea> (accessed November 7, 2023).

²⁴ OHCHR, “China must not forcibly repatriate North Korean escapees: UN experts” (17 October 2023),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3/10/china-must-not-forcibly-repatriate-north-korean-escapees-un-experts> (accessed November 7, 2023).

2023년 4월 4일 결의 52/28호 본문 문단 6²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려보내진 난민(refugees)과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s) 및 국외에서 송환된 다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민에 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후속 조사”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을 포함한” 국제인권법상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우리는 탈북 난민의 더 나은 보호를 위해 본문 문단 6에서 “보장할”을 “보장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난민, 망명 신청자 및 다른 시민의 접촉자와 활동에 관한 정보 공유를 자제할”로 하고 “촉구하며”를 “촉구하고, 사무총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난민, 망명 신청자 및 다른 시민의 송환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주선할 것을 요청하며”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문 문단 6은 북한에서 송환된 탈북 난민, 망명 신청자 및 다른 시민이 겪는 “억류, 고문, 잔혹한, 비인도적인, 그리고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성 및 젠더 기반 폭력, 강제실종 또는 사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섬뜩한 북한의 강제 낙태 및 영아살해 관행을 강조하기 위해 “성”을 “젠더 및 인종을 이유로 한 송환된 임신부의 태아와 산모의 자녀에 대한 강제 낙태 및 영아살해를 포함한 성”으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4. 다른 인권 증진과 책임규명

우리는 2023년 4월 4일자 결의 52/28호 前文 문단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보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 1차 보고에 관한 질의목록에 답할 것을 촉구하며”가 추가되었고, 북한은 2023년 12월 13일 답변을 제출하였지만²⁶ 여전히 자유권위원회(HRC)가 보낸 제 3차 정기보고에 관한 보고 전 질의목록(LOIPR)에는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합니다.²⁷ 이에 우리는 동 결의 前文 문단 18(“국제인권 의무 이행 감독에서 조약기구의 중요한 활동을 인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인권 의무를 준수하고 조약기구에의 정기적, 적시 보고를 보장할 필요를 강조하며”)의 말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자유권위원회가 보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 3차 정기 보고에 관한 보고 전 질의목록에 답할 것을 권고하며”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3년 12월 19일자 총회 결의 78/218호의 본문 문단 18(r) 및 2011년 12월 19일자 결의 66/174호 이후 다른 모든 총회 북한인권 결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하고, 이

²⁵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려보내진 난민(refugees)과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s) 및 국외에서 송환된 다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민이 겪는 억류, 고문, 잔혹한, 비인도적인, 그리고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성 및 젠더 기반 폭력, 강제실종 또는 사형을 포함한 처벌에 관한 COI 조사 결과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후속 조사에 깊은 우려를 다시 표하고, 이 맥락에서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송환 달성을 위하여 송환국을 압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강제송환 금지라는 기본 원칙(fundamental 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준수하고 피난자를 인도적으로 대우하며 피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시 한 번 국가들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그 의정서(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Protocol thereto)의 보호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자와 관련하여 이들 조약을 포함한 국제인권법상 자국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²⁶ Reply to List of Issues, CRPD/C/KEN/RQ/1 (13 Dec 2023),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PD%2FC%2FKEN%2FRQ%2F1

²⁷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LoIPR), CCPR/C/PRK/QPR/3 (22 Jun 2021),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CPR%2FC%2FPRK%2FQPR%2F3

맥락에서 … 인권조약기구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도록 남은 인권조약의 비준·가입을 고려할 것을 … 강력히 촉구”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서도 남은 인권조약의 비준·가입을 촉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3년 4월 4일자 결의 52/28호 본문 문단 2(a)에는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및 의견, 표현,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이들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을 포함한 법령 및 실행의 재검토”가 추가되었습니다. 우리는 문단 2(a)에 코로나 시기 이들 권리를 가혹한 형벌로 억압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또다른 법인 평양문화어보호법 및 청년교양보장법에 대한 언급이 추가되고 “재검토”를 “폐지 또는 개정”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2023년 4월 4일자 결의 52/28호 본문 문단 1(a)에는 사상 처음으로 시민적 및 정치권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 19조 제 2항에 규정된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구하고 받으며 전달하는 자유”가 처음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우리는 문단 1(a)에 자유권규약 제 19조 제 2항의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라는 문구도 추가되어 정보 전파의 다양한 수단을 강조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총회 결의 78/218호의 본문 문단 18(m) 및 2017년 12월 19일자 결의 72/188호 이후 다른 모든 총회 북한인권 결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하고, 이 맥락에서 …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이 되고,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실행을 도입하며, 모든 관련 협약, 특히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검토할 것을 …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서도 ILO 회원 가입,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는 입법 및 실행,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촉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3년 4월 4일자 인권이사회 결의 52/28호의 前文 문단 7 및 2017년 3월 24일자 결의 34/24호 이후 다른 모든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는 “자국 주민을 반인도범죄로부터 보호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책임을 상기하고, 총회가 결의 [각각 71/202호, 72/188호, 73/180호, 74/166호, 75/190호, 76/177호 또는 77/226호에서] COI가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지도부에 반인도범죄를 방지하고 억지하고 가해자가 소추되고 재판에 회부될 것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 것에 주목하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COI 보고서 10주년을 맞아 前文 문단 7의 말미에 “이 맥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는 안보리의 권한을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되거나 로마규정 제 12조 제 3항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수락할 것을 요청하며”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일본, 미국 법원에서의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배상청구의 진척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²⁸ 이에 우리는 내년 결의안에 “대한민국, 일본, 미합중국 법원에서의 소송 및 판결에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배상청구를 통한 책임규명 노력의 진척을 환영하며”이라는 문단이 새로이 추가될 것을 요청합니다.

4. 결론

만약 소수의 국가들이 이러한 인권이사회의 북한 결의안 수정을 막는다면 한국은 합의 채택 대신에 표결 채택을 택하는 것을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전 반인도범죄와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를 확인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 설치를 결정한 2013년 3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22/13호도 표결을 각오하고 추진하자 정작 그 어느 이사국도 표결을 요구하지 않아 결국 컨센서스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²⁸ Promoting accountability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HRC/52/64 (18 January 2023), <https://undocs.org/A/HRC/52/64>

지난 10년간 유엔에서 북한의 우호국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권의 관점에서든 내실이 있는 결의가 표결 없이 채택되는 몰타기 결의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귀 정부가 피해자 중심 해결 실현의 일환으로 추후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상정 전에 국군포로 및 한국인 억류자 가족을 포함한 북한인권침해 피해자들 및 북한인권 단체와 정기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타국 정부들이 20년 넘게 해온 일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귀 정부가 신원을 파악한 국군포로의 수(2007년 8월 마지막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생존 560명, 사망 910명, 행불 300명. 총 1,770명) 및 국군포로 가족 탈북 입국자 수를 공개하고, 이를 유엔에 보고할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단체 및 인사(2023년 12월 28일 기준)

김규리(2023년 10월 9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김철옥 님의 언니)

김정삼(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옥 선교사의 형)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한보이스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THINK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